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의 경위·의미·과제

김강녕 조화정치연구원

논문요약

본 논문은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의 경위·의미·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미사일지침 관련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한미 미사일지침의 변천사와 해제의 배경·의미·성과,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이후 한국의 향후과제를 살펴본 것이다. 한미 양국은 1979년 미사일지침 합의이후 2001·2012·2017·2020년 4차례 개정에 이어 2021년 5월 21일 한미 미사일지침을 해제·종료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를 수용한 전략적 배경으로는 ①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에 유리하다는 판단, ②북한 핵미사일 대응 및 전시작전권 이양에 유리하다는 판단, ③한국의 비핵화 유지에 유리하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의 해제의 의미는 ①한국의 미사일 주권확보, ②한국의 안보능력 향상, ③산업·경제적 파급효과의 증대로, 그리고 미사일지침 해제의 성과는 ①외교적 차원의 성과, ②군사동맹적 차원의 성과, ③우주산업적 차원의 성과로 각각 요약해 볼 수 있다. 한국은 ①주변국들의 불필요한 오해·우려 해소, ②실질적 억제력 확보를 위한 관련기술의 개발, ③미사일전력의 운영을 위한 치밀한 준비를 통해 미사일전력 강화는 물론 방위산업·우주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미사일, 미사일지침, 미사일 주권, 억제력 확보, 방위산업, 우주산업

I. 서론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21년 5월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회담¹⁾을 갖고 그동안 우리 군의 미사일, 무인항공기(UAV·드론), 우주발사체(군사위성 로켓) 개발을 제약해 온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합의했다(정충신 202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사실을 전한다.”며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완전해제·폐지)에 합의했음을 밝혔다(장용석 2021).

존 커비(John Kirby)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021년 6월 1일 브리핑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로 한국방위에 대한 미군역할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것(미사일지침 해제)에 대한 어떠한 것도 한미동맹 또는 여러분이 방위동맹으로 알고 있는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말하고 방위태세에 대한 어떤 변화도 알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제한을 가해왔던 한미 미사일지침이 종료되더라도 미국의 한국방위에 대한 약속은 물론 그 역할도 불변임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상현 2021).

1979년 한미 미사일지침 합의이후 2001·2012·2017·2020년 4차례 개정을 통해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늘린 결과 북한을 사정권에 두는 데 충분한 탑재중량의 미사일 개발권한을 확보했다. 그러다가 지난 2021년 5월 21일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에 한미 양국이 합의함으로써 한국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군사위성 발사용 로켓개발, 탑재중량 무제한의 무인항공기 개발이 가능해져 군사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정충신 2021).

그 동안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권 전환,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핵잠수함 건설추진(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필요)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1) 분단국의 정상회담 어젠다 설정과 그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정주신 2020, 111-152 참조.

는 주권사안의 해결에 적극적 노력을 펼쳐왔다.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결정은 한 나라가 당연히 보유해야 할 미사일주권을 회복·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의 미사일의 사정권 확대는 한국의 외교·안보분야 및 관련 산업계 등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종료)를 두고 ‘고의적인 적대행위’라면서 한미 당국을 어처구니없게도 비난한 바 있다. 북한은 물론 중·일·러 등에도 파장 및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미사일지침을 주제로 한 논문들은 많지 않다. 지난 2021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미사일지침과 관련해서 자주국방과 한미동의 조화적인 견지에서 정리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본 논문은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의 경위·의미·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미사일지침 관련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한미 미사일지침의 변천사와 해제의 배경·의미·성과,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이후 한국의 향후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한미 미사일지침 관련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선행연구(先行研究, prior study, precedent study, pilot study, advance research)란 자신이 연구하고자 한 주제와 동일한 주제로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연구했는지를 간략하게 요약·정리하는 것을 말한다(이태규 2012, ‘선행연구’). 선행연구(pilot study)란 본격적인 조사 및 연구에 앞서, 소규모로 조사 대상에 대해 연구 및 실험해보는 것이다(‘선행연구’ 2018). 논문은 결국 다른 학자가 연구한 수준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거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인류의 집단적 지식수준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최근 한미 미사일지침과 관련해서 좋은 선행 논문으로는 박휘락(2021)의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의 의미와 함의”를 먼저 들 수 있다. 이 글에서 박휘락 교수는 “자세히 분석해보면 미사일

지침 해제가 갖는 실질적인 의의는 기대만큼 크지 않다. 이미 한·미 간에 이전의 합의를 통하여 북한 전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800km의 사거리를 확보한 상태이고, 공격용 탄도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북핵 위협 대응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 미사일지침은 지금까지 자주의 상징으로 곱해된 점이 있고, 따라서 냉정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박휘락 2021, 1).”라고 말하고 있다.²⁾

또한 “이번(2021년 5월 21일) 미사일지침 해제가 전략적인 의미를 갖도록 하려면 한국은 그 탄두의 위력을 핵무기 못지않게 폭발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항공기 타격용이지만 미국과 러시아 등에서 ‘MOAB(Mother of All Bombs)’라고 불리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재래식 폭탄을 개발하였는데, 그와 유사한 대(大)위력의 재래식 탄두를 개발한다면 이번 미사일지침 해제는 전략적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물질과 기술을 활용하여 재래식 탄두로도 적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내용물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이 지향해야 하는 것은 미사일의 사거리나 정확성의 증대가 아니라 탄두 내용물의 위력강화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박휘락 2021, 4-5).”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김지일 박사가 2020년 발표한 논문인 “김영삼 정부의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실패원인”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 그는 김영삼 정부의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의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은 김대중,李明박, 문재인 정부에서 네 차례 이루어졌지만, 김영삼 정부에서는 개정의지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연구 결과, 사례의 모든 정부에서 유사한 특징이 나타났지만 김영삼 정부에서는 대북 호전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한·미 미사일 협상 간 연루(entrapment)의 가능성이 자극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한·미 미사일협정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통해 이론적 접근이 수행되고 한·미 미사일협정의 실체를 파악해 새로운 협

2) 박휘락,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의 의미와 함의,” 『정세와 정책』, 2021년 7월호(통권 340호), p.1.

상 간 유의미한 방향이 제시된 중요한 가치창출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김지일 2020, 1-25).

그 이전인 2018년에 김지일 박사의 또 다른 논문으로는 “새로운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한 사례연구 적용”을 들 수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동맹 간 ‘새로운 미사일지침’ 개정(2017.11)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사실 과거 문재인 정부이전 한미 미사일협정을 상기했을 때 양국은 이견차이로 상당한 갈등양상을 보였지만 ‘새로운 미사일지침’ 개정은 논의가 시작된 지 불과 6개월 사이 합의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성과라고 보고 있다. 과거와 달리 왜 ‘새로운 미사일지침’은 한미동맹 간 특별한 갈등 없이 적극적으로 체결됐는가? 그는 이 논문을 통해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한 질문을 토대로 한미동맹 간 미사일 협정에서 드러나는 역학관계를 과거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그는 사례연구법을 통해 그 해답을 도출한 결과 ‘새로운 미사일지침’ 개정에서 있어 한미동맹 간에는 ‘정책적 조응성’이 작용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능력이 동맹 상대국인 미국의 본토를 향해 완성단계에 이르면서 한미 양국의 미사일협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김지일 2018, 103-133).

필자는 박휘락 교수와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①미사일 주권 확보, ②한국의 안전보장 능력의 향상, ③산업·경제적 파급효과의 증대 등에 무게를 두고자 한다. 김지일 박사의 논지에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지만, 그의 논문들은 2021년 5월 21일 한미 미사일지침이 종료이전에 작성된 논문이다 따라서 두 분의 논문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의 경위·의미·과제를 분석·고찰해 보고자 한다.

미사일지침에 관한 사항을 이론적 바탕 위에서 분석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어떤 시각이나 기준으로 분석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동맹이론의 “자율성-안보 교환(autonomy-security trade-off)”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자존심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 차원에서 분석할 것인지, 아니면 미중대결의 시각에서 분석할 것인지를 설정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해서

한미 미사일지침과 관련해서 이론을 적용할 경우 자주국방 차원에서 보느냐, 동맹이론차원에서 보느냐, 조화적으로 보느냐, ‘자주국방 속에서의 동맹추구’ 차원에서 보느냐, ‘동맹 속에서의 자주국방추구’ 차원에서 보느냐 등에 따라 분석 및 설명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지면관계상 이론적 적용은 논외로 하고 자주국방과 동맹이론의 조화의 관점에서 보고 논리를 전개하고자 한다. 최근 미중패권시대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시사해주는 모델로는 알트펠드(Michael F. Altfeld)·모로우(James D. Morrow) 교수가 주장한 ‘자율성-안보 교환 (autonomy-security trade-off) 모델’을 들 수 있을 것이다(박희락 2016, 35, 38-40 참조).

III. 한미 미사일지침의 변천사와 해제의 배경·의미·성과

1. 한미 미사일지침의 개념 및 체결경위

1) 한미 미사일지침의 개념

한미 미사일지침(Missile Guideline)은 1979년 10월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으로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합의로 시작되어(김경민 2021) 2021년 5월 21일 문재인·바이든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을 통해 종료(해제·폐지)된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규제에 대한 지침이다(“한미 미사일 지침” 2021). 한미 미사일지침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2021)이라고도 종종 불리기도 한다.

그동안 대부분 ‘한미 미사일지침’으로 표기해왔다. 그런데 영문표기대로 보면 ‘미사일 지침’(Missile Guideline)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양국 합의(조약)가 아니라 한국이 미사일 개발과 관련하여 스스로 지키겠다고 통보한 일방적인 자율규제 서한’으로서 일종의 양해각서라서 법적 구속력도 제한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권혁철

2021; 정충신 2021).

남북분단이래 남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경쟁을 벌여왔으며(“대한민국의 탄도유도탄 개발사,” 2021), 1978년 9월 박정희 정부는 백곰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자 미국의 카터 행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했다. 1979년 9월 존 위컴(John A. Wickham, Jr.) 주한미군 사령관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권고서한을 보냈으며, 이에 대해 노재현 국방부장관이 서면으로 동의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이처럼 서면동의에 의한 것이며, 노재현 국방부장관의 동의서한을 미사일지침이라고 부른다(“한미 미사일지침” 2021). 국가간 정식조약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공식문서 형태도 아니지만 한미동맹의 특수한 성격을 감안할 때 사실상 조약에 준하는 암묵적 규제처럼 되어버렸다(임형섭 2020).

다시 정리하자면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 박정희 정부 당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처음 합의되었으며 미국의 미사일 기술이전 대가로 한국이 개발하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김민근 2021). 미사일 탄두중량과 사거리 제한이 걸려 있던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 미국의 통제 하에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바람에 미사일 사거리를 마음대로 늘릴 수 없었던 것이 핵심이다. 그 당시 우선 급한 대로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염두에 두는 바람에 사거리를 180km, 탄두중량 500kg으로 제한하는데 한국이 덩석 동의해버렸다. 그러나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의 미사일 능력이 급상승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여러 번 미국에 사정하다시피 해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조금씩 늘리면서 미사일 개발·생산능력을 조금씩 향상시켜 왔다(김경민 2021).

2) 한미 미사일지침의 체결경위

한미 미사일지침은 1960년대 북한의 도발로부터 비롯되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북한은 1·21 사태, 푸에블로호 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미군 정찰기(EC-121) 피격사건, 칼(KAL)기 납북사건, 해군 방송선 피랍사건, 현충문 폭파사건, 8·15 대통령 저격사건 등

우리측을 상대로 도발을 감행했다. 이 시기 북한의 대남침투와 국지도 발은 1,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북한은 외국으로부터 입수한 미사일을 휴전선 부근에 배치했다(박대로 2021).

미국은 1969년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 1969.7.25)을 발표하여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인끼리’ 즉 ‘아시아 갈등의 아시아화(Asianization of Asian conflicts)’를 강조하고³⁾ 베트남전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 윌리엄 로저스 미 국방장관은 한국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1970년 7월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2만 명 철군계획을 통보했다. 한국문제의 한국화(Koreanization of Korea Problem)(장준갑 2008, 229-250)를 적용하여 1971년 경기 동두천에 있던 주한미군 제7사단도 철수했다. 당시 한국이 군인 5만 명을 베트남에 파병해 미국을 도왔지만, 미국은 한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7사단 철수를 강행했다(정충신 2021).

미국을 믿을 수 없게 된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에 나섰고 1970년 8월 6일 국방과학연구소(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를 설립했다. 그가 핵개발을 염두에 둔 것은 1970년대 초였다. 1972년부터 박정희 대통령 입에서 ‘자주국방’이란 말이 등장하고 독자 핵무기 개발이 거론되기 시작했다(정충신 2021). 군 전력증강사업인 ‘울곡사업’(1974~1995)을 시작하고 비밀리에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 무기개발은 보안을 위해 ‘위장 사업명’을 사용했다. 1974년 미사일 개발사업은 ‘항공공업계획’이란 사업명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유도탄연구소는 ‘대전기계창(창설: 1976.12.2),’ 충남 태안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 비행시험장(완공: 1977.9)은 ‘안흥측후소’로 위장했다(권혁철 2021).

당시 미국은 나이키 허큘리스(NK: Nike Hercules, 최초 제식명 SAM-N-25)를 신형 미사일(유도탄)인 패트리엇(Patriot)로 대체하려는 분위기였는데 박정희 정부는 미국 정부에 대해 나이키 허큘리스 미

3) 1969년 7월 25일 관에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발표한 닉슨독트린은 미국의 대외안전보장책의 하나로서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의 힘으로 한다.’는 내용이 그 요지라 할 수 있다. 천재교육학습부 2017, “닉슨 독트린” 참조).

사일을 개량해 사용하려고 하는데 한국군이 이 미사일을 정비하고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기술습득이 절대 필요하다고 미국을 설득했다(이은영 2007). 1975년 주한미군사령관 명의로 ADD에 보내진 한·미간 체결된 미사일 양해각서(MOU)는 “한국군이 보유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의 사거리 180km와 탄두중량 1,000파운드(453.6kg)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해한다.”고 규정했다(정충신 2021).

나이키 허큘리스 수준의 미사일(유도탄)을 개발하는 쪽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기술지원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미국 맥도넬 더글러스사와 계약을 체결해 연구원의 연수를 보냈다. 이후 미 육군유도탄연구소와 화이트샌드 시험장, 콰절레인 유도탄 시험장을 우리 연구진이 직접 볼 수 있었다. 유도탄 관련 각 시험장 건물도면까지 얻어 왔다(정충신 2021). 한국은 그 후 1978년 9월 26일 미사일 공개 시험발사에 성공하여 미국, 소련(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중국에 이어 세계 7번째 미사일 개발국이 되었다(이영섭 1978, 3).

한국 최초의 국산 지대지 미사일은 미국 기술의 도움을 받아 미국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개량한 것이다. 이 미사일 별칭이 ‘백곰’이었다. 겨울에 폭설을 맞으며 안흥 비행시험장 야외에서 일하던 연구원의 모습이 마치 북극곰 같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권혁철 2021). ‘백곰’ 발사 뒤 주변 강대국들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백곰을 핵무기 운반체로 본 것이다. 일본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핵개발과 연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고, 소련 국방부는 “남한의 핵 개발을 경고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했다(정충신 2021).

미국도 “탄도미사일 개발 뒤에는 핵을 개발할 것이냐?”고 한국 정부를 추궁하고 한국 독자 핵개발 우려하며, “미사일 사거리를 서울에서 평양 타격이 가능한 180km로 제한하라.”고 압박했다. 당시 주한미국대사, 미국정부 특사까지 한국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와 미사일 개발중단을 요구했다(권혁철 2021).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에 미사일 기술을 요구하였고 미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이전

하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평양까지 공격이 가능한 180km와 탄두중량은 500kg으로 제한하게 된 것이다(김민근 2021).

요컨대 닉슨 독트린을 기점으로 주한미군 철수계획이 가시화되자 박정희 정부는 핵개발을 염두에 둔 자주국방에 힘썼다.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1978년 9월 26일 사거리 180km 탄도미사일 ‘백곰’을 개발하자 미국은 한국정부가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다고 의심했다.⁴⁾ 당시 존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은 1979년 9월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권고서한을 우리 정부에 발송하자 노재현 국방장관은 이에 동의하는 답신을 보냈고 이것은 국제법상 효력은 없지만 한미 미사일지침으로 간주되었다. 이로써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최대사거리는 180km, 탄두중량은 500kg으로 제한된 것이다(박대로 2021).

2. 한미 미사일지침의 개정·해제의 역사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지난 1979년 10월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으로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합의로 시작된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되다가 특히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늘고 위협이 커지면서 차츰 제약이 완화되었다. 1979년 제정이후 2021년 5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제되기 전까지 모두 4차례(2001, 2012, 2017, 2020) 개정되었다(김민근 2021). 한미미사일지침의 변화는 <그림 1>과 같다.

4) 1977년 5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진과 식사 때 “미군이 철수하고 나면 핵을 개발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국이 1970년대 중반 미사일개발전담기구를 만들었을 당시 미 국무부 모턴 아브라모위치(Morton Abramowitz) 차관보가 방한해 심문택 ADD 소장을 면담하며 “미사일에 무엇을 탑재하려느냐, 다음 단계로 핵무기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며 따졌다고 한다. 실제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속기록에도 카터 미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한 핵개발 주장이 많이 남아 있다(정충신 2021).

<그림 1> 한미 미사일지침 변화



반중빈, 장예진 기자 / 20210521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T

1) 제1차 개정

1979년 한미 미사일지침 제정이후 수년간 북한은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Scud missile)을 바탕으로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면서 사거리를 늘렸고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시도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를 선언하고 핵무기 개발을 공식화했다(박대로 2021). 이에 김영삼 정부는 미국 정부에 미사일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동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을 촉발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다.

김영삼 정부기간인 1997년 7월, 그리고 김대중 정부기간인 1998년 6월 대한민국은 사거리 900km인 과학로켓 2호를 발사했다.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로 한국에 대포동 쇼크가 발생했다. 이에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이 방미하여 미국에 미사일 사거리를 500km로 늘려달라고 주장했으나, 클린턴 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한미 미사일 지침” 2021).

그러다가 제1차 개정(2001.1)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다. 김영삼 정부에 이어 김대중 정부도 미사일 사거리 확장을 요구했다. 미국은 김대중 정부가 대북 억지차원에서 미사일 사거리를 500km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2001년 10월 17일 미사일지침 제1차 개정을 하게 된 것이다. 제1차 개정을 통해 사거리는 300km로 늘어났으나 탄두중량은 500kg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조항이 적용되었다(정충신 2021).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사용 탄도미사일은 생산은 제한된 사거리와 탄두중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미사일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사거리 및 중량이 무제한이며, 민간용 우주발사체는 연구·개발과 생산까지도 사거리 및 중량이 무제한이었다(“한미 미사일 지침,” 2021).

2) 제2차 개정

미사일지침 제1차 개정(2001.1)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은 이어졌다. 북한은 그 무렵 3년 주기로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대포동 2호: 2006.7.5., 은하 2호: 2009.4.5.)를 시도했으며⁵⁾ 핵실험(제1차: 2006.10.1, 제2차: 2009.5.25)도 병행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미사일 사거리의 연장(延長)을 미국에 요구했다(박대로 2021). 2012년 3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3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5) 그 후 ‘은하 3호’ 2호기를 2012년 12월 12일 발사했다(김강녕 2016, 50-53).

을 앞두고 동아일보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Wall Street Journal) 등 내외신 공동 인터뷰에서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김경중 2020). 이미 그 이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미사일지침 개정을 두 번이나 요구하였다. 미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300km 제한규제를 맺고 있는데, 한국의 300km 규제를 풀어준다면 다른 나라들도 한국처럼 800km 이상으로의 연장을 들고 나올 거라며 난색을 표명하였었다(정용석 2012).

그러다가 제2차 개정(2012.10)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다. 2012년 9월 23일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으로 합의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 후 2012년 10월 7일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으로 새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합의하였다고 밝혔다(박대로 2021). 제2차 개정에서도 사거리를 800km까지 확대하고, 사거리를 줄이는 만큼 탄두중량을 늘릴 수 있는 절충(trade-off) 개념이 적용되었다(손한별 2021). 예컨대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의 경우 탄두중량이 최대 500kg이지만 사거리 500km일 경우 1t, 300km일 경우 2t까지 탄두중량을 늘리는 식이다(PMG 지식엔진연구소 2021, “한미 미사일지침” 참조).

다시 말해서 신미사일지침(NMG: New Missile Guideline)(“한미 NMG개정,” 2019) 즉 제2차 개정을 통해 사거리 300km의 탄도미사일의 경우 기존의 4배인 최대 2톤까지 탄두중량을 늘릴 수 있게 되었다(박진원 2012). 즉 제2차 개정 미사일지침에서는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으로, 사거리 500km, 탄두중량 1톤으로, 그리고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2톤으로 각각 제한하도록 하였다. 그 후 한국은 2015년 사거리 500km, 탄두중량 1톤인 현무-2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데 성공했다(김문경 2015).

3) 제3차 개정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군사도발을 이어갔다. 북한

은 문재인 정부출범(2017.5.10) 직후 미사일 도발(2017.5.14.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 12형 등)을 감행하고(김세일 2020, 195-220) 제6차 핵실험(2017.9.3)을 실시했다.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23일 현무-2C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현무-2는 미사일지침에 따라 최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설계되었으며 축구장 5개 면적을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지니게 되었다.

제3차 개정(2017.11.7)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다. 2017년 7월 29일부터는 문재인 정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간 제3차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논의가 시작되었다. 2017년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개발하는 모든 미사일의 탄두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의견을 조율하였으며(서미션 2017), 2017년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 자리에서 제3차 개정이 이뤄졌다. 이날 한미 정상은 청와대에서 세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 개정 미사일 지침’(3차 개정)을 채택했다(PMG 지식엔진연구소 2021, ‘한미 미사일지침’ 참조). 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유지하는 대신 탄두중량 제한이 사라졌으며(박대로 2021), 북한 전역이 사정권인 사거리 800km 미사일에 1t이 넘는 탄두 탑재가 가능해졌으며(정충신 2021), 다만 사거리 800km를 초과하는 고체로켓 개발에 대한 제한만 남게 되었다(서미션 2017).

미사일지침의 제3차 개정(2017.11.7)은 ‘사거리 800km로 제한, 탄두중량 무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도의 사가리카(Sagarika: K-15) 미사일의 경우 사거리 750km, 탄두중량 1톤인데, 탄두중량을 150kg으로 줄이면 사거리 2,200km이다(“한미 미사일 지침” 2021). 이전까지 우리군의 탄도미사일은 앞서 2012년 10월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최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이란 제한에 묶여 있었으나, 2017년 2017년 11월 재3차 개정에 따라 사거리 800km 미사일에 1t이 넘는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된 것이다(PMG 지식엔진연구소 2021 “한미 미사일지침”). 이러한 제3차 개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미

사일이 바로 현무-4다. 지난 2020년 3월 발사실험에 성공한 현무-4의 탄두중량은 2t, 최대 사거리는 800km이다(박대로 2021).

현무-4는 ‘괴물 벙커버스터’ 또는 ‘괴물 미사일’로도 불린다. 현무-4는 기존 현무-2 미사일(탄두중량 500kg 이상)에 비해 훨씬 크고 무거운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지하를 뚫기 위해 탄두중량을 키워 운동에너지를 최대화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게다가 현무-4의 사거리를 300~500km로 줄이면 탄두중량을 4~5t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세계 각국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의 탄두중량이 대체로 500kg~1t 수준이라는 점에서 4~5t 이상 되는 탄두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며 지하 깊숙이 있는 이른바 ‘김정은 벙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4) 제4차 개정

제4차 개정(2020.7.28)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다.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2020년 7월 28일부터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고체연료를 활용해 우주발사체를 연구·개발·생산·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20년 7월 28일,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한미 미사일 지침,” 2021). 이미 제3차 개정결과 한국이 개발하는 탄도미사일은 최대사거리만 800km로 제한되어 있을 뿐 탄두중량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 위에서 제4차 개정으로 특히 우주발사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해제되어 실질적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개발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김민근 2021).

한미 미사일지침은 ①군사용 탄도미사일, ②군사용 순항미사일, ③우주발사체 등 3개 분야로 나뉘는데, 제4차 개정 요지는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인공위성 등 발사체를 개발할 때 액체연료가 아닌 고체연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체연료는 보관과 주입시간 등 측면의 장점 때문에 군사용 미사일에 주

로 활용되는데, 제4차 개정으로 한국은 인공위성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고체연료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박대로 2021; 이재희 2020).

제4차 개정(2020.7.28)에서 우주로켓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해제되면서 우주산업 확대의 길이 열렸다. 고체연료(solid fuel)와 하이브리드형(hybrid type)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액체연료는 고체연료에 비해 로켓이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약해 로켓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고체연료 제한해제가 필수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었다. 그러다가 고체연료 제한이 해제되면서 우주산업 확대는 물론 우리 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개발의 길도 열리게 된 것이다(PMG 지식엔진연구소 2021, “한미 미사일지침”).

미국의 LGM-118 피스키퍼(LGM-118A Peacekeeper)는 무게 88.45톤, 3단 고체연료, 1단추력 220톤으로 1983년 최초 발사했다. 일본의 엡실론 로켓(Epsilon rocket)은 무게 91톤, 3단 고체연료, 1단추력 220톤으로 2013년 최초 발사했다. 미국은 일본에게는 피스키퍼(Peace Keeper) 개발을 허용했었는데, 제4차 개정에서 한국에도 허용하여, 한국이 곧 피스키퍼를 개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한미 미사일 지침” 2021).

5) 종료

미사일지침의 완전폐지는 지난 2020년 7월말 제4차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의해 미사일 개발에 있어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해제하면서 사거리 800km의 제한도 머지 않아 풀릴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정부는 한국이 사거리 1000~3000km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을 개발하는 것에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등 사거리 제한을 푸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이다(서예진 2020).

지난 2021년 5월 21일은 한미 미사일지침이 종료된 역사적인 날이

었다. 이 날은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해 바이든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 회담을 갖고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의 완전한 폐지를 확정지은 날 이기 때문이다(조민정 2021).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사실을 전했다(“한미 미사일 지침” 2021).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제하기 위해 1979년 설정된 한미 미사일지침이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한미 미사일지침이 종료로 사거리 제한규정이 사라짐으로써 우리군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전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준중거리 및 중거리탄도미사일(MRBM·IR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박대로 2021).

이미 제4차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군사용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제외한 민간용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경우 사거리와 탄두중량 그리고 추력의 제한이 해제되어 민간용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경우 무제한 개발·생산·보유·발사가 가능하게 되었었다. 한미 미사일지침이 해제(폐지)로 군사용으로도 무제한으로 개발·생산·보유·발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한미 미사일 지침” 2021).

3. 미사일지침 해제의 배경·의미·성과

1) 미국의 미사일지침 해제 수용배경

한국이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과 관련해서 미국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미사일 주권을 갖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했지만,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에는 미국의 의미있는 전략적 결심과 판단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를 수용한 전략적 배경으로는 3가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①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에 유리하다는 판단, ②북한 핵미사일 대응 및 전시 작전권 이양에 유리하다는 판단, ③한국의 비핵화 유지에 유리하다는 판단 등이 바로 그것이다(손한별 2021).

첫째는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에 유리하다는 미국의 판단이다(아세안 국가들의 중국 일개일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김진영 2021, 235-270). 즉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미국이 새로 개발한 중거리미사일을 동북아에 배치하려는 하는 여건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1987년 구소련과 중거리핵전력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을 체결했다. 그런데 INF는 중국이 미국의 참여요청을 끝내 거부하면서 2019년 8월 트럼프 대통령 주도하에 폐지되었다. 미국이 중거리미사일 생산·배치전략으로 중국의 협정참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사거리를 800km로만 제한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지침은 이러한 전략과 충돌되기 때문이다(손한별 2021).

미국은 중국이 중화사상(中華思想)을 내세워 세계를 패권화하고 공산 세력을 점차 강화하여 다시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중 경제전쟁과 함께 서방국가와의 동맹을 통해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미국·일본·인도·호주와 함께 한국이 5각의 일원으로 편입되기를 바랐으나 한국의 안보는 한미동맹이지만 경제는 중국과 상당부분 겹쳐 있어서 매우 고심해온 한국의 입장을 이해함에 따라 한국이 간접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가장 좋은 조건이 중국을 겨냥하여 직접 압박할 수 있는 한국의 중거리미사일 보유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유효적절하고 양국 모두에게 성과가 크다고 보고 미국이 전략적으로 결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중국견제’를 그리고 한국은 ‘자주국방’의 기회의 명분을 모두 얻은 것이다. 한미 미사일지침의 해제는 한국의 요구도 있었지만 미국의 전략적 결심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이러한 것들이 시대적으로 적절히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김민근 2021).

5·21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는 매우 비릿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은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대구 등 중부 이남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인 최대 800km 범위 안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제약

을 거두게 되면, 그 목적은 북을 넘어선 ‘그 밖의 위협,’ 즉 중국을 겨누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웃나라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탄도미사일을 보유하지 않는다. 미국은 2019년 8월 러시아의 ‘조약위반’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1987년 12월 구소련과 맺었던 사거리 500~5500km의 중·단거리 탄도·순항 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했다. 이후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이 미국의 신형 중·단거리 미사일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16~2017년 사드사태보다 몇 곱절은 더 심각한 갈등을 불러올 미사일 배치를 시도하는 대신 한국 자체의 능력 강화라는 길을 택한 셈이다.

둘째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및 전시작전권 이양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즉 핵강대국을 지향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미사일전력 증강소요를 들어주는 것이 미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 때문이다(손한별 2021).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전시작전권 이양준비와 관련해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해제는 필수적이고, 또한 자주 국방이라는 슬로건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제한해제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아닐 수 없다(자랑스런 대한민국 2021).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전시작전권 전환이 사실상 힘들어진 상황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라는 나름대로 큰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 등을 제한해 왔던 한미 미사일지침의 해제는 한마디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및 전시작전권 전환노력과 관련해서 한미간 이해가 일치되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한국의 비핵화 유지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즉 한국내 핵보유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제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정충신 2021).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핵·미사일 확산방지를 미국이 크게 우려해 왔고 한국은 이런 미국의 정책기조에 충실히 협력해 왔다. 그러한 협력노력이 미국의 신뢰를 얻으면서 미사일 규제를 푸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김경민 2021). 한

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미국은 비확산 노력을 증진하는데 있어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평가하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였다.”고 밝힌 내용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손한별 2021).

북한의 제6차 핵실험(2017.9.3)이후 불과 최근까지도 극단적 생각으로 보였던 ‘핵무기 보유’ 여론이 한국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2017년 9월 13일 서울발로 보도한 바 있다. WP는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에 따라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제6차 핵실험이후 이 논의가 핵심이슈가 됐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에 대한 한국인의 좌절감을 반영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인 60%가 핵무기보유에 찬성한다는 갤럽조사 결과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신문은 1991년 한국에서 철수된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날카롭게 갈라놓았고 한국의 제1야당이 재배치 주장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신지홍 2017). 미국은 이러한 핵보유 여론이 한국 내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선제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폐지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미사일지침 해제의 의미와 성과

(1) 미사일지침 해제의 의미

김대중 정부시기인 2001년 1월에 제1차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 탄도미사일 보유)이 이루어진 후 이명박 정부시기인 2012년 10월 제2차 개정(사거리를 800km로 연장, 탄두중량 500kg)에 합의해서 남해안 지역에서 북한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 후 문재인 정부시기인 2017년 11월 제3차 개정(사거리를 800km로 유지, 탄두중량을 완전폐지)이 이루어졌다. 탄두중량이 없어지는 덕분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한국이 축구장 200개 면적에 해당하는 평양의 중심부를 절멸(絶滅)할 수 있는 대량 파괴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그 미사일 이름이 바로 현무-4다.

그 후 지난 2021년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를 합의함으로써 우리나라는 42년 만에 사거리와 탄두중량 모두 제한 없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제1차 개정이 시작된 이래 제4차 개정(2020.7.28)을 통해 액체연료 로켓이든, 고체연료 로켓이든 한국이 자주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 바탕 위에서 지난 2021년 5월 21일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의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면서, 독자적인 방위력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을 마련되었다. 한미 미사일지침의 해제·종료는 국방·군사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으며, 한국의 방위산업·우주산업이 수혜를 입을 거라는 기대도 크다. 다양한 차원에서 그 의미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손한별 2021). 한미 미사일지침의 해제는 ①한국의 미사일 주권 확보, ②한국의 안보능력 향상, ③산업·경제적 파급효과의 증대라는 세 가지 큰 의미로 요약·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김경민 2021).

첫째는 한국의 미사일 주권 확보다. 정치적 차원에서 주권국가로서 자국의 방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이 미사일지침의 테두리 내에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아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른바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는 평가는 아직 이른 측면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이 강력한 미사일 능력보유를 통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억제·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이다(손한별 2021).

한미 미사일지침이 해제·종료될 때까지 여러 차례 개정에도 남아있던 사거리 제한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미사일지침 해제문제는 역대정부에서도 숙원사업이었다(손덕호 2021). 전술한 바와 같이, 한미 미사일지침은 탄도미사일 개발규제에 대한 지침으로서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처음으로 합의한 후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차원의 우리의 지속적인 사거리 연장 및 탄두중량 확대노력으로 2001·2012·2017·2020년 총 4차례의 개정을 통해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중량이 차츰 늘어났다. 그러다가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에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이 종료되기에 이른 것이다.

우선은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중량에 대한 제약이 사라짐으로써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기술적 제약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2021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42년 만에 한·미 미사일지침이 해제된 것은 탄도미사일 개발의 ‘족쇄’를 없애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한미 미사일지침의 종료에 따른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및 탄두중량 제한의 해제는 한국의 미사일 주권이 확보라는 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김민근 2021; PMG 지식엔지니어 2021, “한미 미사일지침” 참조). 다시 말해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에 따른 이른바 ‘미사일 주권’ 확보(회복)는 추후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앞두고 한국이 ‘안전한 국방 자주권’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을 의미한다(장용석 2021).

둘째는 한국의 안전보장 능력의 향상이다. 미사일 강국인 중국, 일본에 이어 북한마저 미사일 강국이 되었는데, 한미 미사일지침이 해제됨으로써 이제 한국도 미사일 강국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거리 800km를 넘어 2,000~3,000km의 미사일 능력을 갖추게 되면 중·일 등 주변국과 북한이 한국을 함부로 볼 수 없게 됨은 당연지사다(김경민 2021). 한미 미사일지침이 해제·종료됨으로써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과 전략적 타격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군 안팎에선 미사일지침 해제가 미사일 전력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국방력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는 일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장용석 2021).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탱크, 대포, 군함, 전투기 등 모든 종류의 무기체계를 마음껏 보유할 수는 없는 이유는 엄청난 국방비가 들어가고 국민은 무거운 세금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큰 무기체계는 단추만 누르면 상대 적국을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 능력이다. 한국 전역에 가능한 한 많은 양의 미사일을

고슴도치 가시처럼 빼곡히 배치해놓으면 엄청난 전쟁 억지력이 생긴다(김경민 2021). 그럼으로써 한국의 안전보장능력은 크게 향상 될 것이다.

셋째는 산업·경제적 파급효과의 증대다. 아마 한미 미사일지침 4차 개정(2020.7)을 통해 고체연료를 활용하여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로 향후 사거리 관계 없이 필요에 따라 고체연료 로켓 즉 미사일을 많이 개발하면 방위산업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고 미사일 가격도 지금보다 상당히 저렴해질 것이다. 더불어 미사일 외피 즉 로켓 연료통에 대한 소재기술도 발전할 것이다. 로켓 연료통을 가볍게 만들어야 똑같은 규모 로켓으로 무게가 더 큰 인공위성이나 탄두를 실을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은 알루미늄, 탄소섬유수지, 베타 티탄 합금 등의 신소재를 접목하고 있다. 소재 기술 발달은 항공기와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제조업 기술을 발달시켜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미사일 개발은 로켓기술 개발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가벼워지는 중소형 인공위성 발사횟수가 늘어나 한국의 인공위성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되고 개발도상국에 위성을 수출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경민 2021).

한국은 현재 75t 추력의 엔진을 4개로 묶어 300t 추력을 내어 1.5t의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누리호를 개발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지금은 액체연료 로켓인 누리호에 고체연료의 보조로켓을 붙여 보다 더 큰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일본의 기간(基幹) 로켓인 H-2A 로켓은 최대 4개의 고체연료 로켓을 붙여 무려 16t의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국제우주정거장에 우주비행사들이 먹을 밥과 실험 시설들을 수송하고 있다. 세계가 놀라는 일본의 우주능력이다. 그러나 다음에 우리도 누리호 규모가 커지면 고체연료 보조로켓을 옆에 붙여 무거운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게 된다.

(2) 미사일지침 종료의 외교적·군사적·우주산업적 성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는 대포와 함포의 시대였지만, 2021년 현재 우리는 미사일 시대에 살고 있다. 다행히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 미국도 한국을 한 단계 더 높은 동맹으로 인식한 결과물 중의 하나가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라 할 수 있다. 후손에게 더욱 튼튼한 안전보장 환경을 만들어주고 우주개발의 시간을 크게 앞당긴 업적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김경민 2021). 5·21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지침 해제는 ①외교적 차원의 성과, ②군사동맹적 차원의 성과, ③우주산업적 차원의 성과 등 여러 차원의 성과들로 요약·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외교적 차원의 성과이다.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높아진 위상이 잘 투영된 한국 외교의 크나큰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김경민 2021). 미중의 경쟁, 한반도 비핵화 협상, 코로나19 등 중대한 전환점을 맞은 한국의 외교력의 위상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군사적 능력뿐만 아니라 비확산·국제평화에 대한 의지를 오랜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도 확인받은 것이기도 하다. 또 자강력을 증진하여 미중경쟁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손한별 2021).

둘째는 군사적 차원의 성과다. 먼저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군사적 견지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포괄적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미사일지침의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한미동맹의 결속력과 신뢰성을 확인하였으며, 더욱 건강하고 심화된 동맹관계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는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포괄적·호혜적 책임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성과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 군사전력증강 차원에서 보면 전방위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핵심능력을 확보한 것이며, 보다 먼 거리에 있는 전략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타격능력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여 현대전에 필수적인 위성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 성과인 것이다.

셋째는 우주산업적 차원의 성과다.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는 우주개발의 시작점이자 우주공간으로부터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기술과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성과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손한별 2021). 또한 향후 우주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는 우주산업과 4차 산업을 위한 우주 고속도로를 개척한 ‘미러클 코리아(Miracle Korea)’의 초석이자 민간 우주로켓 발전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식 발사체를 통해 위성발사가 가능하고, 우리기술로 해외위성발사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정충신 2021). 또한 한국은 아르테미스협정(Artemis Accords, 2024년까지 달에 유인 우주인을 착륙시키고 2028년에는 달 남극 부근에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정)(한경닷컴 2021, “아르테미스 협정”) 가입을 통해 우주개발 프로젝트에 선진국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주 먹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⁶⁾ 향후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방위역량 강화차원에서 공중·해상 기반 우주발사체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수단) 등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정충신 2021).

IV.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이후 한국의 향후과제

1. 미사일지침 해제·종료의 파장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지난 1979년 처음 체결 당시 미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이전하되 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중량이 각각 180km와 500kg으로 제한했다가 개정

6)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서명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미국 주도의 우주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의 10번째 국가 참여가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한 국가는 미국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일본,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영국, 아랍에미리트(UAE), 우크라이나 등 9개국(이현경 2021).

과정을 거치면서 사거리가 조금씩 연장되다가 지난 2021년 5월 21일 한미 미사일지침 완전해제에 따라 우리나라도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독자적으로 개발·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노민호 2021).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 미사일지침은 오랫동안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제약해 왔던 족쇄였다(길운형 2021). 한국 미사일 연구·개발·생산과 관련한 최대 사거리 및 탄도중량 제한의 해제는 한국의 미사일 주권확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PMG 지식엔진연구소 2021, ‘한미 미사일지침’). 한미 미사일(사거리) 지침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한국의 군사적 이슈였다. 이번 2021년 5월 21일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및 종료는 한국의 진보, 보수 진영이 모두가 일치되게 환영하는 보기 드문 이슈가 아닐 수 없다(육군 갤러리 2021).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는 주변국에게는 새로운 위협으로 인지될 수 있는바 그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해제로 긴장하는 국가는 당연히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순일 것이다. 중국은 한국이 ‘인도·태평양안보전략’ 쿼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했지만, 미사일개발 원천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북경과 중국전역이 사정권 안에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김민근 2021).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지난 2021년 5월 27일 “미국 매체가 ‘한국 미사일이 중국 내륙을 위협한다.’며 고의적으로 선전해 한 중관계를 이간질하고 있다.”며 “서방 관측통들이 ‘이번 미사일지침 폐지로 한국은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대중전략의 일부분이라고 해석했다.”고 보도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추스바오는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의 전략적 균형을 바꿀 수 없고 중국을 위협하기도 어렵다.”며 “서방국가가 ‘한국 탄도미사일이 중국 내륙

을 위협한다.’는 대대적인 선전으로 도발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정충신 2021).

중국은 이미 한국의 주요표적 600여 곳에 미사일을 고정 공격하도록 배치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제 사정이 달라지게 된다. 중국이 한국의 중거리미사일 개발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겠지만, 한국은 미사일 개발을 주저해야 할 필요성이나 의무가 없음은 물론이다(김민근 2021).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미사일지침 종료는 한반도 긴장고조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고 비난함으로써 향후 첨단미사일 및 전술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정충신 2021). 향후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로 인해 북한도 강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중량 5톤 이상의 미사일은 전술핵무기급의 가공할 파괴력을 자랑한다. 한국은 핵무기는 없지만 북한을 완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가공할 중량의 고정밀 탄도미사일을 아무런 제재없이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알고 있다. 특히 김정은은 자신의 심장부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을 한국이 다량 확보하는데 대하여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마 이제 대놓고 핵위협을 선불리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김민근 2021).

일본도 적지 않게 당황하며 불편해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한국이 보유한 미사일만으로 부산 혹은 제주도에서 발사하면 일본의 2/3이상은 표적이 가능한데, 중거리미사일은 일본전역을 마음놓고 타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심리적 타격은 상당히 오래 갈 것이고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다(김민근 2021).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와 관련해서 일본 자유민주당 소속 참의원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는 환영하지 못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관련 기사를 인용하면서 한국은 현재도 사거리 약 800km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는데, 이 상한선을 벗어난 신형 미사일은 일본에게 걱정거리밖에 안 된다고 환영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해당 트윗 같은 당 중의원이자 전 방위대신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는 일본이 장사정미사일을 갖게 되면 한국이 반발할텐데 이번 미사일

지침 폐지로 한국이 장사정미사일을 갖게 된다면 일본을 비난할 수 없게 되며,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같은 당 중의원 이사 전 방위대신인 나카타니 겐(中谷元)은 한국을 의심하면 방어를 못한다며, 한국이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쏠 가능성은 낮으며 따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는 한미 양국의 이견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이라고 애써 평가절하 해서 보도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의 미사일주권 회복 바람과 미국 정부의 중공군제전략이 겹친 것이라 객관적으로 보도했다(“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2021).

2. 한국의 실질적 억제력 확보를 위한 대응과제

1) 한국의 미사일·우주발사체 능력

현재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은 어떠한가? 현재 한국군이 개발한 신형 탄도미사일은 현무시리즈로 현무-1부터 시작하여 최신의 미사일인 현무-4까지 개발되었다. 현무(玄武)라는 이름은 ‘북방의 수호신’을 뜻한다. 현무계열 미사일은 적도발사 지상전략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공격용 탄도미사일이다. 최근 2020년 우리 군이 발사·실행에 성공한 현무-4의 탄두중량은 2t, 최대사거리 800km이다. 현무-4는 괴물 병커스터 내지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 기존 현무-2 미사일(탄두중량 500kg 이상)에 비해 크고 무거운 탄도를 장착할 수 있다. 지하를 뚫기 위해 탄두중량을 키워 운동에너지를 최대화하도록 설계했다(김민근 2021).

현무-4의 사거리를 300~500m 줄이면 탄두중량을 4~5t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세계 각국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의 탄두중량이 대체로 500kg~1t 수준이라는 점에서 4~5t이상 되는 탄두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 현무-4 미사일은 콘크리트는 24m 관통, 일반 토양은 지하 120m까지 관통할 수 있는 가공할 파괴력을 자랑한다. 지하 깊숙이 있는 이른바 김정은 병커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로 북한에서 당연히 긴장하고 있으며, 김여정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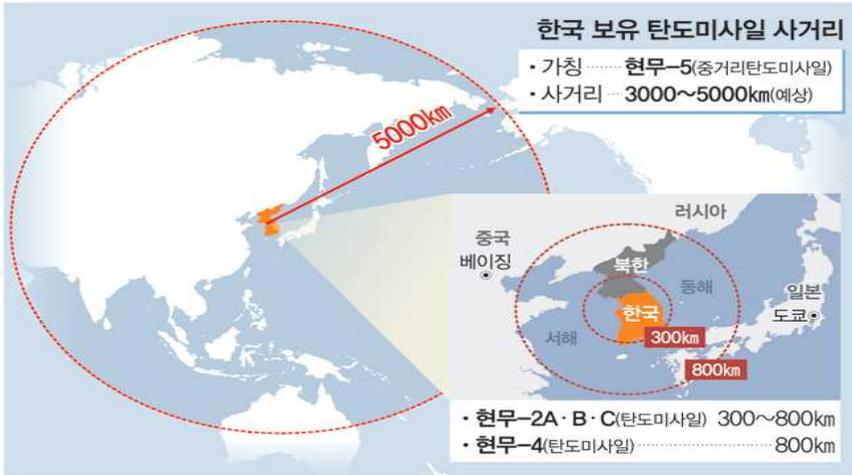
미 이 미사일을 문제 삼은 바 있다(김민근 2021).

그러면 미사일지침 해제이후 한국의 미사일 개발수준은 어떠한가? 미사일 지침 완전해제에 따라 우리나라도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독자적으로 개발·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3,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대북 대응용 무기를 넘어 중국·일본 등 동북아 전역이 사거리에 들어오는 미사일 능력을 갖출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능력은 현재로서 충분하여 중거리미사일 개발을 추진한다면 1~2년 안에 완전 개발하여 작전배치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김민근 2021).

첫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최대 180km, 탄두중량은 최대 500kg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었으나, 2017년 11월 3차 개정에서 탄두중량이 무제한으로 풀리면서 지난달 한미정상 회담 전까진 800km 사거리 제한만 남아 있었다. 최대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로는 우리나라에서 북한 전역과 중국 산둥반도 일부지역 정도만 타격할 수 있다. 즉, 그동안에는 우리 군 미사일전력의 상한선이 ‘북한 대응’에 묶여 있었다. 우리 군이 지난 2020년 시험발사에 성공한 최신 탄도미사일 ‘현무-4’가 탄두중량은 무려 2t에 이르지만, 사거리가 800km로 제한되었던 것도 이 같은 지침상의 제한 때문이었다(장용석 2021).

그러나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로 사정권이 확대되게 된다. ‘현무-4’ 개량형 혹은 추후 개발될 ‘현무-5’는 사거리 한계에서 벗어나 베이징 등 중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3,000~5,000km 수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정충신 2021). 전문가들은 현재도 ‘현무-4’의 탄두중량을 500kg 정도까지 줄인다면 1,500km 정도는 충분히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2년 전력화된 국산 순항미사일 ‘현무-3C’의 사거리가 이미 1,500km에 이른다(장용석 2021). 한국보유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한국보유 탄도미사일 사거리



출처: 정충신, “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 풀려…북한 전역 넘어 베이징·도쿄 ‘사정권,’” 『문화일보』(2021.6.1).

향후 한국의 미사일 발전 가능성은 어떠한가? 우선 국가안보분야에서 정보·감시·정찰(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자산의 보유 가능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세계적인 경제력과 군사능력을 보면 사실 진즉(趁卽) 군사정찰위성을 보유했어야 했다. 정보·감시·정찰 자산 보유를 위해서는 군사정찰보유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김민근 2021).

미 국방부는 한국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은 탄두중량 2t에 사거리 800km로, 탄두중량 500kg일 경우 사거리 2,500km 정도로 분석하고 있다.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종료로 일본 도쿄(東京)나 중국 베이징(北京) 등 대도시를 위협하는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 사거리 수천km 이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가능하지만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ICBM을 만들 전략적 이유는 없다. 현재 미사일 사거리 제한인 800km를 넘어선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과 약 1500km로 알려진 현무-3 순항미사일의 개량형 개발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하

다. 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미 육군이 미래 핵심무기체계로 점찍은 LRHW(Long Range Hypersonic Weapon)와 유사한 사거리를 가진 새 탄도미사일을 만들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정충신 2021).

지난 2021년 5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국방부는 “공중·해상 기반 우주발사체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장용석 2021). 발사체는 육지의 고정된 곳이나 이동차량을 이용해 발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상이나 비행기를 이용해 발사할 수도 있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이 대표적인 사례이다(김승준 2021).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사일과 우주발사체는 같은 원리로 움직이지만, 목적지가 다르다. 하늘을 향하면 우주로 가는 발사체가, 땅이나 물건을 목표로 하면 무기가 된다. 원리가 동일하기에 한미 미사일지침은 무기뿐만 아니라 우주발사체 개발의 족쇄가 되었다. 한미 미사일지침의 42년만의 종료로 우주발사체 개발에 족쇄가 풀렸다.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로 ①군사·비군사 발사체 기술 장벽, 그리고 ②플랫폼 제한 등이 사라져 한국 공공·민간의 우주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김승준 2021).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민간 우주탐사, 과학, 항공 등 연구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사라지면서 방산업계도 관련기술 개발과 신규 무기체계 수요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 한국우주산업 발전의 일대 전환점이라는 분석이다. 그간 한국은 사거리 800km를 초과하는 미사일(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따라왔다. 이번 미사일지침 종료로 제약 없이 군과 민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역량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군에서 무기체계 등 각종 개발을 하면서 습득한 기술의 민간이전 등을 통해 기술을 활용할 길이 열렸다(김승준 2021).

한미 미사일지침에는 군사목적 개발기술과 비군사 목적(우주 발사체

등) 개발기술을 서로 전용할 수 없는 조항이 있었다. 한미 미사일지침의 해제·종료로 이러한 장벽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원칙상 군용기술로 개발됐을 경우 비군사 목적 활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후에는 기존기술을 포함하여 새로 개발된 기술을 양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 개발투자의 효율성이 커지게 된 것이 사실이다. 또 같은 맥락에서 기존 군사발사체 기술보유 기업의 사업확장도 쉬워질 전망이다(김승준 2021). 또한 발사체는 우주산업에서 사람·위성·화물이 우주로 나가는 수단이다. 발사비용을 낮추는 등 발사체 기술이 고도화될 경우, 관련산업이 활성화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우주탐사기업인 스페이스X(PMG지식엔진연구소 2021, “스페이스X”)는 재사용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단가를 낮춘 결과,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이용한 통신 서비스 ‘스타 링크’ 등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김승준 2021).

향후 우주관련 기술을 국방부분에서 도입하려는 투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민간투자도 늘어나 선순환 체제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로 기술교류가 확대돼 개발 효율성이 제고되고 공공수요·시장투자가 확대돼 민간산업의 성장발판이 될 수 있다. 스페이스X 역시 2010년대 초에는 미 항공우주국(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의 발사용역을 수주해 비용을 일부 충당하기도 했다. 발사체를 비롯한 우주기술산업이 ‘뛰어들어 도전할 만한 시장’의 요건을 갖춰나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승준 2021).

2) 실질적 억제력 확보를 위한 과제

국가안보분야이외에도 우주분야와 관련해서 우리는 상업적 위성을 개발하여 우리기술의 위성을 쏘아 올리고 세계 각국의 위성과 우주탐사선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기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상황에 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ICBM 보유는 그리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

각된다.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의 확보만으로도 한국군의 강력함을 각인시킬 수 있다. 중거리 고정밀 미사일로 무장한 한국의 국력과 군사력의 잠재성, 파괴력을 주변국에 명확히 인식시킬 수 있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전쟁에 방호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김민근 2021).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에 따라 우리 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 군은 2020년 말 국산 SLBM의 지상 사출시험을 완료했고 2021년 내 수중 발사시험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산 SLBM 개발이 완료될 경우 해군의 도산안창호급(3000톤급)에 우선 탑재될 전망이다.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에 SLBM 발사를 위한 수직발사대(VLS)가 설치돼 있다.

본격적인 SLBM 운용을 위해서는 4,000톤급 이상으로 개발될 신형 잠수함에 디젤엔진 기반의 재래식 추진체계가 아니라 핵추진체계를 탑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이는 미국과 다른 종류의 협상이 필요한 분야여서 당장은 현실화되긴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나 5,500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또한 그에 장착할 로켓 추진체 등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에 본격 착수하더라도 완성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장용석 2021).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확대와 함께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로 기대되는 분야는 폭격능력을 갖춘 대형 무인기 개발이다. 기존 미사일지침에서는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순항미사일과 무인기의 탄두중량(무인기는 탑재중량)이 최대 2.5톤으로 제한됐었으나, 미사일지침 해제와 함께 이 역시 무제한이 됐다(장용석 2021).

이외에도 미국·중국·러시아 등이 경쟁적으로 개발 중인 탄도미사일 기반의 극초음속무기 또한 우리 군의 미래 개발과제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탄도미사일의 추진력을 이용해 고공으로 상승했다가 목표물을 향해 활강하는 극초음속무기는 최대 시속 마하20(약 2만4,480km)의 속도를 낼 수 있다(김대영 2020). 기존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론 이처럼 빠

른 속도의 무기를 막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 군은 지난 2020년 말 열린 주요지휘관회의 때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극초음속무기 확보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으며,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관련기술 연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장용석 2021).

이외에도 우리 국방부는 ‘공중·해상 기반 우주발사체 플랫폼’ 개발을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에 따른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다.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발사한 로켓을 이용해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인공위성뿐만 아니라 군사위성 발사에도 사용될 수 있다. 또 해당 플랫폼 기술 자체는 공중발사탄도미사일(ALBM)이나 무인기의 공중 발사 등 군사적 용도로도 다양하게 응용될 가능성도 있다(장용석 2021).

한편 5·21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합의이후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할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동북아의 군비경쟁은 이미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지침이 촉발요소라고 볼 수 없다. 이미 우리와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국방비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도 우리의 사거리를 뛰어넘는 미사일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전수방위’(상대방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 행사) 때문에 공격용 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다(노민호 2021).

실제 지난 2020년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국방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국면임을 감안하더라도 전 세계 군사비 랭킹 1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 2021년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비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실제 비용으로는 2,520억달러(약 280조7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26년 연속 중국은 국방비를 늘려왔다. 아울러 러시아는 617억 달러, 일본이 491억달러, 한국은 457억 달러였다(노민호 2021).

반면 한국이 이번 미사일지침 해제에 따라 사실상 군비경쟁의 ‘핵심 참여자’로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북·중·러 3국이 이미 중·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새롭게 등장하고, 일본이 최근 들어 ‘방어 목적’이라는 미명하에 중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또는 도입을 추진하는 등의 상황이 확대될 수 있다는 평가다(노민호 2021).

특히 북한과 중국은 ‘자위권’ 목적으로 기존의 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고, 러시아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한 미국을 의식하며 군비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INF조약은 1987년 미국과 소련간 체결한 핵탄두 장착용의 중거리와 단거리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이다. 이는 사거리 500~5,500km인 중·단거리 탄도와 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조약은 중국이 미국의 참여요청을 끝내 거부함에 따라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주도하에 폐지되었다(에듀윌 상식연구소 편저 2019, “중거리핵전력조약”).

아울러 미국이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으로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쿠릴열도~일본~대만~필리핀~말라카 해협)에 대중 미사일망을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되짚어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중국은 미국과 소련처럼 INF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INF 때문에 제약이 있었지만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금은 INF가 깨졌고 미국도 중·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한국도 동참할 수 있다. 향후 군비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관련국간 미사일 통제체제를 만드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단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참여할 가능성은 사실상 낮는데 현실성은 별개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려는 노력은 이어져야 할 것이다(노민호 2021).

2017년과 2020년의 두 차례 미사일지침 개정, 2021년 종료를 통해 완전한 미사일 능력을 갖추게 된 만큼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도 있으며, 무엇보다 실질적 억제력 확보를 위한 과제로 주어져 있다. 실질적 억제력 확보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손한별 2021).

첫째 정치적 차원에서 주변국들의 불필요한 오해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변국들의 눈치를 볼 일은 아니지만, 한국의 군사력 증강과 한미동맹의 발전에 촉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미사일지침 종료와 관련하여 “주변국들의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손한별 2021).

둘째 국방차원에서 미사일지침 종료는 성과이기도 하면서 시작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미사일은 사거리나 탄두 중량이 핵심적인 기술이기는 하지만, 타격목표에 대한 감시정찰과 정보분석 능력, 충분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파괴력, 상대의 미사일방어망을 침투하기 위한 빠른 속도, 다양한 투발 플랫폼 개발 등 관련기술을 함께 확보해야만 실질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5월 27일 국방과 학연구소가 강원도 삼척에서 미사일 탐지 및 계측과 관련한 동해시험장 준공식(김귀근 2021)을 개최하는 것도 이같은 필수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셋째 군사작전차원에서는 실제 미사일 전력을 운용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미사일 작전을 기획하고, 미사일 운용교리를 마련하고, 타격계획을 작성하며, 연습 및 훈련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 군의 미사일 전력을 통합·지휘할 수 있는 체계나 조직, 결정적인 속도와 압도적인 작전템포를 유지하기 위한 지휘통제통신체계, 미사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호체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손한별 2021).

이처럼 미사일 규제가 풀렸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 2,000~3,000km 되는 탄도미사일 개발은 아직 해보지 않은 기술이라 새로운 설계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 사거리가 긴 미사일일수록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데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재진입에 성공한 경우에도 가능하면 폭약 없이 쏘아 올린 탄두를 회수해 탄두상태를 세밀히 조사해야 비로소 안정된 미사일을 갖게 된다(김경민 2021). 미사일지침 해제 결과 한국은 이제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에서 무제한으로 개발

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북관계의 긴장양상은 변화하고 있으며, 주변국의 막강한 미사일 개발소식은 속속 전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미사일 억지전략은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고려하는 대승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한국의 자체적 미사일 억지 능력은 북한과 주변국 상황에 비해 취약하다. 한국은 비핵화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재래식 미사일 개발을 통해 동북아시아 역내에서 자국의 평화를 위한 주도적 억지력을 생성해 내야할 시점이다(김지일 2019, 63-198).

끝으로 일본처럼 소리나 소문 없이 미사일 능력을 키워가는 은밀한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규제를 풀어준 이유 중의 또 다른 하나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주한미군에 2,000km 이상 사거리를 지닌 중거리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면 중국 반발이 커지는데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 중국이 크게 반발할 수 없고 미국은 한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사일 규제가 풀렸지만 일본처럼 소리나 소문 없이 미사일 능력을 키워가는 은밀한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거리가 얼마나 된다는 사실을 말할 필요도 없고 조용히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한국 미사일이 대단히 정교하고 우수하다는 인식만 심어주면 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 미사일이 1,000km 이상 목표물을 오차 범위 30cm 이내로 원점 타격하는 게 가능하려면 미국의 군사용 GPS(전 지구적 측위 시스템) 정보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한국판 GPS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김경민 2021).

V. 결론

한미 양국은 2001·2012·2017·2020년 4차례 개정에 이어 2021년 5월 21일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종료에 합의했다. 1979년 한미 미사일지침 합의이후 동(同)지침은 2001년부터 4차례 개정되면서 ‘사거리

800km 제한' 조항만 남아있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김경민 2021). 특히 제3차 개정(2017.11), 제4차 개정(2020.7), 해제선언(2021.5)을 모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시기에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한 집중적인 군사·외교적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손한별 2021).

지난 2021년 5월 21일 한미 미사일지침의 해제는 실로 큰 의미와 파장과 과제를 함축하고 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 한국이 미국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제한했다. 사실 한미동맹 간 미사일협정에 있어 1979년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체결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지니고 있지 못했지만 한국은 동맹상대국인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협력적 자주국방'을 추구하는바 협상을 통해 미사일지침을 개선해왔다(김지일 2019, 63-198). 북한 미사일 위협이 증가할 때마다 역대정부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북핵 대비 국방태세를 강화해왔고 그러한 노력이 최근 주변정세 변화와 맞물려 한미 미사일지침의 해제라는 큰 성과를 이룩해내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21년 5월 21일 미국이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를 수용한 전략적 배경으로는 ①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에 유리하다는 판단, ②북한 핵미사일 대응 및 전시작전권 이양에 유리하다는 판단, ③한국의 비핵화 유지에 유리하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 미사일지침의 해제는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의 미사일주권 회복 바람과 미국 정부의 중국견제전략이 서로 통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오랜 바람인 미사일주권을 회복한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전략과 관련해서 한국의 미사일 능력향상이 중국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자랑스런 대한민국 2021). 또한 한미 미사일지침이 해제되더라도 한국이 핵개발 등으로 동북아에서 지역안보를 해칠 우려가 없음을 미국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정충신 2021). 5·21 미사일지침 해제는 다양한 차원에서 그 의미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손한별 2021).

한미 미사일지침의 해제의 의의는 ①한국의 미사일 주권확보, ②한국

의 안보능력 향상, ③산업·경제적 파급효과의 증대로 그리고 미사일지침 해제의 성과는 ①외교적 차원의 성과, ②군사동맹적 차원의 성과, ③우주산업적 차원의 성과로 각각 요약해볼 수 있다. 한미 미사일지침의 완전해제로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의 '족쇄'가 완전히 풀렸다. 중국과 북한은 비대칭 전력은 핵무기는 물론이고 중·단거리 미사일까지 대거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미사일 전력 강화의 토대가 마련된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노민호 2021).

한미 미사일지침의 해제이후 한국의 국방·군사분야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과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미사일 주권이 회복이라는 정치·군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의 뒷받침 속에서의 한반도 평화구상 재추진을 위한 동력확보라는 의미도 갖는다(손한별 2021). 일각에서는 주변국인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의 군비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동북아시아가 화약고가 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모양새다(노민호 2021).

미 국방부는 한미 미사일지침이 해제되었다 할지라도 한국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향후 한국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군사위성 발사용 로켓개발, 탑재중량 무제한의 무인항공기 개발이 가능해져 군사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도모·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국 주변국이 모두 다 미사일 강국인 만큼 한국도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를 계기로 어느 나라도 한국을 위해하지 못하도록 미사일 강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한미공조와 자조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①주변국들의 불필요한 오해·우려 해소, ②실질적 억제력 확보를 위한 관련기술의 개발, ③미사일전력의 운영을 위한 치밀한 준비를 통해 미사일전력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방위산업·우주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혁철. 2021. “닉슨독트린, 백곰 그리고 미사일지침.” 『세계한인신문(Overseas Koreans Times)』(5월 27일).
- 길윤형. 2021.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양날의 칼인가, 우주개발 기회인가.” 『한겨레』(5월 23일).
- 김강녕. 2016.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과 한국의 대응.” 『한국군사학논총』 제 5집 제1권(통권 제9호)(6월 30일), 41-75.
- 김경민. 2021. “미사일·인공위성 개발…이제 한계는 없어졌다.” 『매경 이코노미』 (5월 31일).
- 김경중. 2020. “李大統領 ‘北도발 대비, 미사일사거리 연장해야.’” 『서울 투데이』 (3월 22일).
- 김귀근. 2021. “국방부, 미사일지침 해제에 ‘주변국 영향 고려 결정한 것 아냐.’” 『연합뉴스』(5월 24일).
- 김대영. 2020. “[김대영의 밀덕] 2020년 주목해야 할 신무기들 ② ‘극초음속 무기.’” 『비즈한국』(1월 13일).
- 김문경. 2015. “사거리 500km 이상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YTN(6월 3일).
- 김세일. 2020. “북한 장·단거리 미사일 위협 대응체계 연구.” 『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제1호, 195-220.
- 김승준. 2021. “[미사일지침 해제]② ‘족쇄’ 풀린 하늘길…‘한국판 스페이스X’ 열릴까.” 『뉴스 1』(6월 4일).
- 김지일. 2018.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사례연구 적용.” 『국가전략』 제 24권 제4호, 103-133
- 김지일. 2019. “문재인 정부의 미사일지침 개정 이후 한국의 미사일 억지전략 방향.” 『전략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제77호), 63-198.
- 김지일. 2020. “김영삼 정부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실패 원인.” 『대한정치학회보』 제28권 제4호, 1-25.
- 김진영. 2021. “‘일대일로’ 구상과 아세안 국가들의 중국 대응.” 『한국과 국제사회』 제5권 제1호, 235-270.

- 노민호. 2021. “[미사일지침 해제]③북중에 미일까지…‘동북아 화약고’ 되나.” 『뉴스 1』(6월 4일).
- 박대로. 2021. “42년 만에 미사일 지침 종료, 北 도발과 함께 한 변천사.” 『뉴시스』(5월 22일).
- 박재완. 2020. “코로나19 이후 미·중 갈등과 국제질서의 변화 전망.” 『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제4호, 87-109.
- 박진원. 2012. “미사일 사거리 800km로 연장…탄두중량 4배 증가.” 『SBS』(10월 7일).
- 박휘락. 2016.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비교: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의 적용.” 『국가전략』 제22권 제2호, 35-61.
- 박휘락. 2021.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의 의미와 함의.” 『정세와 정책』 7월호(제23호), 1-5.
- 서미선. 2017. “文대통령-트럼프 40분 통화…‘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뉴스 1』(9월 15일).
- 서예진. 2020.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가능성과 그 의미.” 『시사위크』(7월 30일).
- 손덕호. 2021. “42년만에 되찾은 ‘미사일 주권’…中 사정권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해져.” 『조선일보』(5월 22일).
- 손한별. 2021. “42년만에 ‘미사일 주권’ 회복…의미와 과제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5월 26일).
- 신지홍. 2017. “WP ‘北6차 핵실험 이후 한국내 핵무기보유 여론 힘어어.’” 『연합뉴스』(9월 14일).
- 에듀윌 상식연구소 편저. 2019. 『에듀윌 시사상식』(9월호).
- 육군 갤러리. 2021.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Missile Guideline)의 역사.”(5월 24일).
- 이상헌. 2021. “미 국방부,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미 역할 변화?’ 문자 ‘불변.’” 『연합뉴스』(6월 2일).
- 이영섭. 1978. “이것이 「미사일」이다.” 『중앙일보』(9월 28일).
- 이재희. 2020.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풀렸다: 청와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오늘부터 다양한 형태 우주발사체 개발·생산·보유 가능.’” 『YBC 연합방송』 (7월 29일 12:35).
- 이태규. 2012. 『항공우주공학용어사전』, 서울: 새녘출판사.

- 이현경. 2021. “한미 정상회담서 韓 참여 밝힌 ‘아르테미스 협정’이란.” 『동아시아언스』(5월 24일).
- 임형섭. 2020. “한미정상, 미사일지침 완전해제 논의…‘미사일주권’ 확보 기대.” 『연합뉴스』(5월 21일).
- 장용석. 2021a. “軍이 개발한다는 ‘공중·해상 기반 우주발사체’는?.” 『뉴스시 1』(6월 1일).
- 장용석. 2021b. “[미사일지침 해제]① 족쇄 풀린 韓미사일, 무기체계 ‘게임체인저.’” 『뉴스 1』(6월 4일).
- 장준갑. 2008. “닉슨독트린과 미국의 대한정책: 1969년 8월 한미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제34호, 229-250.
- 정용석. 2012. “韓美 원원 전략으로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 풀어야.” 『코나스』(7월 19일).
- 정주신. 2020. “분단국의 정상회담 어젠다 설정과 그 후속조치의 실행가능성 비교연구.” 『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제4호, 111-152.
- 정충신. 2021. “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 풀려…북한 전역 넘어 베이징·도쿄 ‘사정권.’” 『문화일보』(6월 1일).
- 조민정. 2021. “문대통령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전한다.’” 『연합뉴스』(5월 22일).
- 천재교육학습부. 2017. 『과목별 학습백과 동아시아사(고등)』.
-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1. 『시사상식사전』. 서울: 박문각.
- 한경닷컴. 2021. 『한경 경제용어사전』.
- “선행연구.” 2018. 『위키백과』(4월 26일).
- “대한민국의 탄도유도탄 개발사.” 2021. 『위키백과』(5월 4일).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2021. 『나무위키』(6월 22일).
- “한미 미사일 지침.” 2021. 『위키백과』(6월 2일).
- “한미NMG개정.” 2019. 『위키백과』(10월 9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한국형발사체.” https://www.kari.re.kr/kslvii/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001&srch_menu_nix=N9F8Fm6P(검색일: 2021/6/25).
- 김민근. 2021.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의 의미와 영향, 그리고 전망”(5월

24일). <https://blog.naver.com/kmg7420/222363858561>(검색일: 2021/6/8).

이은영, “ADD 무기개발 3총사의 핵·미사일 개발 비화,” 2007.3.29., https://blog.daum.net/daewon2_4/10417565(검색일: 2021/9/10).

자랑스런 대한민국. 2021.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의 의미”(5월 24일). <https://blog.naver.com/kimhs2769/222364457965>(검색일: 2021/6/12).

투고일 : 2021년 6월 27일 . 심사일 : 2021년 7월 23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7월 30일

* 김강녕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에서 국제정치전공으로 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조화정치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논문으로는 “한국의 주요 영토분쟁과 해결방향: 총론적 이해”, “북한의 게임체인저 전략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등이 있다.

<Abstract>

The Process, Meaning, and Tasks of Lifting the ROK-U.S. Missile Guidelines

Kim, Kang-nyeong
(Institute of Global Harmony)

This paper to analyze the process, meaning, and tasks of lifting the ROK-U.S. Missile Guidelines. To this end, this paper consists of an introduction; a review of prior studies and theories on the Korea-U.S. Missile Guidelines; the history of evolution of the ROK-U.S. Missile Guidelines and the background, meaning, and results of the lifting of the guidelines; the ROK's future tasks after lifting the South Korea-U.S. missile guidelines; and conclusion. The ROK and the U.S. agreed to lift and end the South Korea-U.S. missile guidelines on May 21, 2021, following four revisions in 2001, 2012, 2017 and 2020. The strategic background of the U.S. acceptance of the lifting of the ROK-U.S. missile guidelines is that it is advantageous for the U.S. to pursue the India-Pacific strategy,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missiles and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e significance of lifting the South Korea-U.S. missile guidelines can be summarized as ①securing South Korea's missile sovereignty, ②improving South Korea's security capabilities, and ③increasing industrial and economic ripple effects. The results of lifting the South Korea-U.S. missile guidelines are summarized as ①diplomatic achievements, ②military alliance achievements, and ③space industry achievements. The ROK should do its best to strengthen missile power als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defense and space industries by ①resolving unnecessary misunderstandings and concerns, ②developing related technologies to secure practical deterrence, and ③operating missile power.

Keywords : Missiles, Missile Guidelines, Missile Sovereignty, Securing Deterrence, Defense Industry, Space Industry